

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전문위원 고 일 준

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11월 12일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1월 14일

3. 제안이유

가.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·양성하기 위하여
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
위함

4. 주요내용

가. 법인은 재단법인으로 설립 (안 제2조)

나. 재단에서 시행할 사업 규정 (안제4조)

다. 재단의 임원 및 사무국 설치 근거마련 (안 제5조, 제6조)

라.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한 도비 및 시군비 출연 (안 제8조)

마. 기금의 적정집행을 위한 주요사항 보고, 사업계획서·결산서
제출, 지도감독 (안 제9조, 제11조, 제12조, 13조)

바. 관계법령 등 위반시 재단에 대한 제재 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설립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어 있고, 주요내용도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음.

붙임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